

- **B1ONE** 고용혁신 프로젝트 -
기업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재공고

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익산·정읍시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 기능을 연계하고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B1ONE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전주·익산·정읍시에 소재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이 근로자복지로 환류하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B1ONE(바이원) 권역내 기업 성장 지원과 근로자 환류형 복지 확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동시 지원 모델 구축

B1ONE (바이원)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원 범위로, 전북지역 내 바이오산업 특화 기초자치단체로서 전주(연구), 익산(생산), 정읍(실증) 기능을 연계하여 BIO(바이오)+ONE(하나)라는 의미의 권역 설정

- **신청자격** : 전주·익산·정읍시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협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추가 설치할 계획인 바이오기업
- **지원규모** : 바이오기업* 12개사,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바이오기업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학·연료, 기능성식품·화장품 등 공고문 하단 지원대상 산업분류 코드 참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지역 특화 기능*을 활용해 기업성장 및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공고일 이후 채용자에 한함)
* 전주(기술개발)-정읍(실증검증)-익산(제조/생산)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24일(금) 15:00

- **시행방법** : [1. 바이윈 고용이음 기반지원] 세부 유형 중 택 1 하여 사업신청 → 선정기업 중 해당기업에 [2. 바이윈 고용이음 확장지원(추가지원)]
 ※ 기업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를 확인하여 일괄 지급

II 지원내용

1. 고용이음 기반지원 [유형 중 택1]

- 지원대상 : 전주, 익산, 정읍 소재 바이오기업
 ※ 이전확장형의 경우 해당 지역 이전추가 설립 추진 기업(지원금 지급 전 사업자등록 등 증빙 필수)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세부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①기능이음형	②이전·확장형	③협력이음형
지원대상	전주, 익산, 정읍 지역 중 2개 이상 지역 기능을 연계하여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전주, 익산, 정읍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설립을 통해 기능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전주, 익산, 정읍 소재 기업이 전북내 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공동성과 창출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지원
지원규모	총 12개사,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지원내용	기능이음을 통한 패키지 지원 기술이전, 위탁생산 실증 및 시험·분석 등	이전·설립 촉진을 위한 시설구축(인테리어), 임차비, 장비이전 및 물류·이사비 신규 사업장 시설컨설팅 등 (자산취득 불가)	공동 R&D지원 교육·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 브랜드/제품개발 등
지원조건	신청기업 소재지를 포함하여 2개 지역 이상의 기능 연계 필수	기능기반의 이전·설립 필수 *공고일 이후 이전기업	기업-기업, 기업-기관, 기업-대학 등 기업 중심 컨소시엄
기업별 선정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10인 미만 소기업 10%) ※ 자부담금 사용처 참고 지원금 15백만원당 신규고용 1명 이상 채용약정 필수 (26년 5월 8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인정)			
지원예시	전주에 사업장을 둔 A기업이 익산에 소재한 제조업체(기관)에 위탁하여 시제품 제작	타 지역에 위치한 B기업이 정읍에 연구소 설립시 시설구축 지원	익산에 사업장을 둔 C기업이 전북에 소재한 D대학과 공동연구개발

※ 유형별 지원대상 규모는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금 사용처

※ 자부담금은 참여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에 사용하되 부담금 중 50% 이상 근로자 직접지원(휴가비, 상여금 등 현금지원) 필수

구분	사용처	증빙방법
기업 자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환경 개선(조명/소음개선, 사무장비 구입 등) - 사내 근로자 편의시설 구축 및 운영 - 교육 및 자기개발,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등 	운영계획에 따른 이체내역 등 ※ 유관기관 환경개선 사업 등 타지원사업으로 집행한 내역 불인정

2. 고용이음 확장지원 [기반지원 선정기업 중 조건충족 기업]

- 사업내용 : 기반지원 참여기업 중 단계별 성장* 기업에 추가 지원
* 전주(연구) → 정읍(실증) → 익산(제조)
- 지원대상 : 기반지원 참여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 선정방법 : 기반지원 신청기업 중 희망기업 추가 신청서제출(붙임5) → 1차 대상선발 → 단계적 추진현황 점검 →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원규모 : 단계별 최대 15백만원(기반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 이내)
 - ※ 기반지원 선정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채용약정 및 기업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음
 - ※ 기존실적+기반이음 사업내용 중 3개 지역 모두를 연계한 경우, 기반이음 채용약정으로 고용 3명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 기업당 지원금은 기반지원 + 확장지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총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지원금은 기업 선정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단계별 성장기업(수행실적 증빙 필수)

단계	의미	인센티브	지급조건
실증단계	R&D → 실증	5~10백만원	- 정읍 실증기관 활용 계약 체결 - 시험·검증 수행 실적
제조단계	실증 → 제조	10~15백만원	- 익산 생산시설(GMP 등) 활용 - 시제품 또는 양산 착수

- [지원예시] ① 실증단계 : (전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정읍)에서 실증을 추진
 ② 제조단계 : (정읍)에서 실증을 마치고 (익산)에서 제조를 추진

- 지원내용 : 기반지원 유형내 추가 지원, 또는 기업 수요에 따른 유형의 사업화 지원(자율구성) * 지원대상 확정 후 예산 및 세부사업 구성

III 추진절차

참여신청	요건검토	선정평가/협약	사업수행	성과창출/지원금지급
~ 7. 24(금) 15:00	→ 7.27(월)~29(수)	→ 8월 2~3주(예정)	→	→ ~ 12월 31일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및 신청요건 확인	서류 및 대면평가 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	협약일 ~ 10월 31일 프로그램 운영 및 중간점검	참여자만족도 조사/개별성과 및 채용검증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24일(금) 15: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ife6581@gmail.com) ※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 문의 : 창업일자리팀 양이정 차장, 김재상 사원
(☎ 063-210-6581, 6582)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구분
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붙임 포함)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 총괄카드 [발급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조회 → 보험 가입정보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화면 캡처 또는 인쇄	
④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소요비용 견적서 각 1부	
⑦	고용이음 확장지원 신청서(붙임 5)	해당시
⑧	권역외 기업의 경우 구체적 이전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기업지원)과 중복 신청한 경우 선정 시 2개 사업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조정됨
- 서류 제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 선정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실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4.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분야(바이오 관련 업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단순 유통·도소매·중개업 등 제품 판매 중심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체 기술개발 계획과 수행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적 분쟁, 제재, 행정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참 고 | 지원대상 산업분류 코드

연번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비고
1	C109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
2	C10897(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	C2011	기초 유기 화합물질 제조업	C20
4	C2012	기초 무기 화합물질 제조업	
5	C203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C2032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7	C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8	C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9	C211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C21
10	C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11	C2122	한의약품 제조업	
12	C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3	C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4	C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5	C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C27
16	C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7	M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70
18	M7012	공학 연구개발업	
19	M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0	M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M72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바이오산업 관련 업종을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의약·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농생명·화학·바이오소재·연구개발서비스 등 관련 기업

※ 단, 해당 업종 외 기업이더라도, 사업 내용·주요 제품·기술개발 분야·매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이오산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